

檢 討 事 項

憲法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고도 國民投票을 實施하기
위해서는 別途로 “國民投票案”公告가 必要한가?

1. 現行 國民投票法 (1973. 3. 3 政府公布)에는 國民投票案을 어느 기간동안 公告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다만 第4共和國 憲法에는 “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の 期間 公告하여야 하며 國會議決을 거치지 않고 바로 國民投票로 確定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리고 現行 國民投票法 第8條에서 “國民投票案”은 “國家의 重要政策案 또는 憲法改正案”으로 用語가 정리되어 있고,
4. 同條 第14條第2項에서 “國民投票案公告日後 21日 現在投票할 수 없을 경우 國民投票案 公告日로부터 5日以内に 不在者 申告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現行 憲法改正案이 國會에서 議決後 別途로 “國民投票案(憲法改正案)”을 20日 以上 公告해야 하는가에 對한 해석상의 문제가 提起됨.
5. 그러나 現行 國民投票法은 第4共和國에서 “大統領이 提案하는 憲法改正案을 바로 國民投票로 確定”(國會議決을 거치지 않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現行 憲法改正節次上에는 通用하기가 곤란한 點이 있음.

6. 따라서 同 國民投票法은 現在 추진 중인 憲法改正案이 이루어지기 前에 國民投票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實施 및 國民投票 公報의 配付등에 必要한 期間을 감안하여 改正하여야 될 것으로 思料됨.